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의무화 및 범위 확대 〉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99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 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제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현행	개정안
제36조(장학금 지원제정의 설치) <u>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제정(이하 “장학금제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제36조(장학금 지원제정의 설치) <u>학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u> ----- ----- ----- -----.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 <u>신설</u> >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u>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u>재단은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무상지급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② ----- ----- -----수급자 ----- -----.

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다자녀가정의 학생 및 대통령령으로----- ----- ----- -----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함) 제36조¹⁾는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명시하고 있음.

동법 제49조의⁴²⁾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 1) 장학재단법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장학재단법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모든 자녀'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동법 제36조의 장학금 지원계정을 통해 학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바, 한국장학재단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³⁾하고 있음.

< 학자금 지원 구간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한 자녀, 두 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I 유형)		전액	570			420			350		-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첫째	전액	570			480					-	-
	둘째	전액										
		셋째	전액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자료: 교육부

< 연도별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원 현황 >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인원	215,033	216,615	202,515	217,358	208,360
금액	775,210	786,216	731,397	941,515	913,594
1인당 지원액 (만원)	360.5	363.0	361.2	433.2	438.5

자료: 교육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3) (국가장학금 I 유형) 저·중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지원구간별(8구간 이하)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B학점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미혼인 만 39세이하 입학자까지)에게 지원구간(8구간 이하)별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B학점 이상)

의 학자금 지원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현재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9구간과 10구간의 대하여도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⁴⁾하려는 계획에 따라,

2022년에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첫째 학자금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와 중위소득 200%(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학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음.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021.9.15.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2021년 기준) 〉

(단위: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현행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개선	다	첫째	700(+18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자	둘째	전액							
	녀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기초·차상위 2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지원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및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①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②중위소득 200% 이하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이하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③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던 9구간, 10구간까지 지원구간을 확대하고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1조 2,700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⁵⁾ 되는바,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 적용 시 학자금 지원구간별 다자녀 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비교 >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현행	다자녀	첫째	전액	570			480					-	-
		둘째										-	-
		셋째이상	전액									-	-
↓													
개정안	다자녀	첫째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둘째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자료: 교육부 자료 재구성

서울대학교는 대학 학자금의 경우 자녀의 출생으로부터 약 20년 후에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출생률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 보기

5) (8구간 이하) 구간별 지원 학생 수 × (구간별 학생 평균 등록금-다자녀 장학금 지원액) = 약 1,662억
(9~10구간 전액) 9~10구간 추정인원 × 평균 등록금 = 약 1조 1,000억

어렵고, 저소득층이 많은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오히려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고소득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정의 실효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93